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거창군결산검사위원회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거창군수 귀하

2020년 4월 21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거창군 의회로부터 거창군 2019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0년 4월 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거창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 하고, 거창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거창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 속비, 명사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결산 검사 위원

| | |
|---------|-------|
| 대 표 위 원 | 김 종 두 |
| 검 사 위 원 | 임 종 호 |
| 검 사 위 원 | 양 호 일 |
| 검 사 위 원 | 이 종 문 |

목 차

| | |
|--------------------------|----|
| I. 결산검사 경과 ----- | 5 |
|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 6 |
| 1. 거창군 재정의 개황 ----- | 6 |
| 2. 세입·세출 결산 ----- | 8 |
| 3. 기금의 결산 ----- | 20 |
| 4. 재무제표의 결산 ----- | 22 |
| 5. 성과보고서 ----- | 25 |
|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 27 |
| I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 30 |
| 1. 세입·세출 결산 분야 ----- | 30 |
| 2. 성과보고서 분야 ----- | 42 |
| 3. 수범사례 ----- | 49 |
|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 53 |
| V. 금고의 결산 ----- | 63 |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0. 4. 2. — 2020. 4. 21.(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 직 위 | 성 명 | 담 당 업 무 | 비고 |
|------|-------|-----------------------|----|
| 대표위원 | 김 중 두 | 재무제표 결산 및 검사 총괄 | |
| 위 원 | 임 중 호 |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 |
| 위 원 | 양 호 일 |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 및 개선 권고사항 | |
| 위 원 | 이 중 문 | 세입세출 및 금고결산 | |

3. 결산검사 세부일정

| 구 분 | 일 자 별 | 결 산 검 사 내 용 | 비고 |
|-------|-------------|------------------------|----|
| 군 본청 | 4.2.~4.13. | 재정상황 파악 및 결산내용 적정여부 검토 | |
| 군 의회 | 4.14.~4.16. |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 |
| 직속기관 | 4.17.~4.19. |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 |
| 사 업 소 | 4. 20.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 |
| | 4. 21. | 결산검사 총괄정리 | |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거창군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

| 구 분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일반회계 | 세 입 | 514,855,237 | 523,685,519 | 610,800,628 | 685,158,459 | 799,844,863 |
| | 세 출 | 383,476,529 | 369,344,239 | 398,098,997 | 415,062,720 | 631,699,788 |
| | 결산상잉여금 | 131,378,708 | 154,341,279 | 212,701,631 | 270,095,739 | 168,145,075 |
| 특별회계 | 세 입 | 67,563,402 | 66,373,684 | 73,151,701 | 75,352,297 | 79,417,468 |
| | 세 출 | 35,733,977 | 31,027,203 | 33,820,555 | 37,580,356 | 41,899,937 |
| | 결산상 잉여금 | 31,829,425 | 35,346,482 | 39,331,146 | 37,771,941 | 37,517,531 |
| 기금 | 수 입 | 14,027,841 | 14,188,402 | 14,149,637 | 13,743,529 | 174,148,892 |
| | 지 출 | 792,113 | 802,697 | 584,462 | 610,014 | 772,368 |
| | 결산상 잉여금 | 13,235,728 | 13,385,705 | 13,565,175 | 13,133,515 | 173,376,524 |
| 총 계 | 세입(수입) | 596,446,480 | 604,247,605 | 698,101,966 | 774,254,285 | 1,053,411,223 |
| | 세출(지출) | 420,002,619 | 401,174,139 | 432,504,014 | 453,253,090 | 674,372,093 |
| | 결산상 잉여금 | 176,443,861 | 203,073,466 | 265,597,952 | 321,001,195 | 379,039,130 |

○ 2019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늘어난 것은 세수증가로 세입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79,039,130천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 년도에 10,845,656원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비고 |
|----------------------|------|------|------|------|------|----|
| 자치단체 채무계 a(b+c+d) | 0 | 0 | 0 | 0 | 0 | 0 |
| 공채 b | 0 | 0 | 0 | 0 | 0 | 0 |
| 차입금 c | 0 | 0 | 0 | 0 | 0 | 0 |
| 채무부담행위 d | 0 | 0 | 0 | 0 | 0 | 0 |
| 지방공기업 채무 e | 0 | 0 | 0 | 0 | 0 | 0 |
| 채무총합계 f(a+e) | 0 | 0 | 0 | 0 | 0 | 0 |

○ 2015년도 이후로 채무계가 0원으로서 건전 재정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2)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 관점 | 재정지표 | 산정방식 | 주의 기준 | 심각(위기) 기준 |
|------------|--------------|-------------------------------------------------------|--------|-----------|
| 채 무 관 리 | ① 예산대비채무비율 | $\frac{\text{지방채무 잔액}}{\text{총예산}}$ | 25%초과 | 40%초과 |
| | ② 채무상환비 비율 | $\frac{\text{지방채무 상환액}}{\text{일반재원}}$ | 12%초과 | 17%초과 |
| 세 입 관 리 | ③ 지방세 징수액현황 | $\frac{\text{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 50%미만 | 0%미만 |
| 자 금 관 리 | ④ 금고잔액 현황 | $\frac{\text{당해연도 분기말 잔고}}{\text{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 20%미만 | 10%미만 |
| 공기업 | ⑤ 공기업 부채비율 | $\frac{\text{부 채}}{\text{순 자 산}}$ | 400%초과 | 600%초과 |
| | ⑥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 | |

거창군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 재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 재정자립도 : 6.21%
- 재정자주도 : 66.69%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예 산 현 액 | 세입결산액(A) | 세출결산액(B) | 결산상 잉여금 (C =A-B) |
|-----------------|---------------|---------------|-------------|---------------------|
| 합 계 | 1,034,236,484 | 1,053,411,223 | 674,372,093 | 379,039,130 |
| 일반회계 | 782,117,824 | 799,844,863 | 631,699,788 | 168,145,075 |
| 특별회계 | 77,969,768 | 79,417,468 | 41,899,937 | 37,517,531 |
| 공기업특별회계 | 46,842,821 | 47,217,840 | 31,400,317 | 15,817,523 |
| 상수도사업 | 20,048,065 | 20,366,891 | 14,143,541 | 6,223,350 |
| 하수도사업 | 26,794,756 | 26,850,949 | 17,256,776 | 9,594,173 |
| 기타특별회계 | 31,126,947 | 32,199,628 | 10,499,620 | 21,700,008 |
| 의료보호기금 | 982,729 | 977,305 | 918,410 | 58,895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30,101 | 30,142 | 30,101 | 41 |
| 주차장관리 | 658,339 | 692,542 | 218,715 | 473,827 |
| 산업단지조성사업 | 5,434,986 | 5,440,446 | 1,920,232 | 3,520,214 |
| 수질개선 | 5,575,379 | 5,580,013 | 4,728,179 | 851,834 |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768,221 | 770,142 | 638,254 | 131,888 |
| 농업발전기금 | 17,677,192 | 18,709,038 | 2,045,729 | 16,663,309 |
| 기 금 | 174,148,892 | 174,148,892 | 772,368 | 173,376,524 |

| 회 계 별 | 현년도 채무상환 | 이 월 액(D) | | | | |
|-----------------|-------------|-------------------------|-----------------------|------------|-----------|------------|
| | | 명시 | 사고 | 계속비 |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잉여금 |
| 합 계 | | 55,058,273 (117,970) | 32,939,855 (2,105) | 17,437,643 | 6,751,727 | 93,475,106 |
| 일반회계 | | 51,738,694 (117,970) | 31,316,722 (2,105) | 14,966,643 | 5,402,808 | 64,720,207 |
| 특별회계 | | 3,319,579 | 1,623,133 | 2,471,000 | 1,348,919 | 28,754,899 |
| 공기업특별회계 | | 1,525,819 | 974,511 | 850,000 | 1,261,894 | 11,205,299 |
| 상수도사업 | | 830,000 | 744,503 | | 195 | 4,648,652 |
| 하수도사업 | | 695,819 | 230,008 | 850,000 | 1,261,699 | 6,556,647 |
| 기타특별회계 | | 1,793,760 | 648,622 | 1,621,000 | 87,025 | 17,549,600 |
| 의료보호기금 | | | | | 49,403 | 9,492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 | | | | 42 |
| 주차장관리 | | | | | | 473,826 |
| 산업단지조성사업 | | 1,100,000 | 465,992 | 1,621,000 | 14,923 | 318,298 |
| 수질개선 | | 571,551 | 182,630 | | 22,699 | 74,954 |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 122,209 | | | | 9,679 |
| 농업발전기금 | | | | | | 16,663,309 |
| 기 금 | | - | - | - | - | - |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결산액은 1,053,411,223천원으로 예산현액 1,034,236,484천원보다 19,174,73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다.

전년대비 279,156,939천원(36.05%)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이전수입(54.5%)이고, 총 1,053,411,223천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6.5%, 54.5%이다.

○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64.01%인 674,372,093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79,039,130천원이다.

○ 이 중 명시이월비 55,058,273천원, 사고이월비 32,939,855천원 및 계속비

17,437,643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6,751,72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3,475,106천원이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결산상잉여금(기금포함)은 379,039,130천원이다.
- 세출은 전년대비 221,119,006천원(48.8%) 증가하였으며, 총 1,034,236,484천원의 예산현액 중 674,372,093천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65%로 확인되었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결산액 | 782,117,824 | 803,332,970 | 799,844,863 | 325,574 | 3,162,534 |
| 결산확인액 | 782,117,824 | 803,332,970 | 799,844,863 | 325,574 | 3,162,534 |
| 차 액 | 0 | 0 | 0 | 0 | 0 |

○ 세입결산 개요

- ▶ 수납액 799,844,863천원은 예산액의 102.2%로서 17,727,03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에 기인한다.
- ▶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5%이며 미수납액은 3,162,534천원으로서 지방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무재산 52,587천원, 행방불명 45,309천원, 기타 769,739천원으로 발생되었는바,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다.
- 불납결손처분은 325,574천원이 발생되었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으로 검사결과 적정하게 검토되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 수납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액 |
|-------------|-------------|----|
| 799,844,863 | 799,844,863 | 0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 연도별 | 예산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예산대비징수결정액 | 징수결정대비수납액 | 징수결정대비불납결손액 |
|------|-------------|-------------|-------------|------------|-----------|-----------|-------------|
| 2019 | 683,358,232 | 803,332,970 | 799,844,863 | 325,574 | 117.5% | 99.5% | 0.04% |
| 2018 | 613,495,684 | 689,160,381 | 685,158,459 | 1,376,147 | 112.3% | 99.4% | 0.19% |
| 증감 | 69,862,548 | 114,172,589 | 114,686,404 | △1,050,573 | | | |

-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자동차세 증가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법인소득,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세수증대이며,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1,376,147천원 보다 1,050,573천원이 감소한 325,574천원이다.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291,794천원, 행방불명 5,408천원, 평가부족액 27,802천원, 기타 344천원이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불납결손 | 미수납액 | |
|------------|-------------|-------------|-------------|------------|-----------|-----------|
| 합 계 | 782,117,823 | 803,332,970 | 799,844,863 | 325,574 | 3,162,534 | |
| 지방세 | 소 계 | 27,438,543 | 28,229,772 | 26,822,217 | 185,078 | 1,222,477 |
| | 주민세 | 1,150,104 | 1,139,731 | 1,090,978 | 433 | 48,321 |
| | 재산세 | 6,026,001 | 5,908,919 | 5,760,600 | 268 | 148,051 |
| | 자동차세 | 9,877,756 | 9,527,448 | 9,054,232 | 2,204 | 471,012 |
| | 담배소비세 | 3,310,578 | 3,961,047 | 3,961,047 | 0 | 0 |
| | 지방소득세 | 6,556,190 | 6,483,608 | 6,332,822 | 37,706 | 113,079 |
| | 지난년도수입 | 517,914 | 1,209,019 | 622,538 | 144,467 | 442,014 |
| 세외 수입 | 소 계 | 11,983,224 | 23,867,082 | 21,789,289 | 139,940 | 1,937,853 |
| | 재산임대수입 | 203,224 | 208,717 | 207,947 | 0 | 770 |
| | 사용료 수입 | 1,615,894 | 1,425,392 | 1,408,077 | 0 | 17,315 |
| | 수수료 수입 | 1,334,600 | 1,850,172 | 1,838,581 | 0 | 11,591 |
| | 사업수입 | 1,211,000 | 1,368,371 | 1,368,230 | 0 | 141 |
| | 징수교부금수입 | 567,551 | 544,000 | 544,000 | 0 | 0 |
| | 이자수입 | 2,450,000 | 5,335,406 | 5,327,752 | 3 | 7,651 |
| | 재산매각수입 | 50,000 | 310,742 | 310,742 | 0 | 0 |
| | 부담금 | 10,000 | 41,201 | 17,229 | 0 | 23,972 |
| | 과징금및과태료 | 494,600 | 1,179,739 | 770,187 | 3,224 | 406,328 |
| | 기타수입 | 3,896,355 | 10,159,900 | 9,806,371 | 0 | 353,529 |
| | 지난연도 수입 | 150,000 | 1,443,442 | 190,173 | 136,712 | 1,116,556 |
| 지방교부세 | 280,864,200 | 288,872,870 | 288,872,870 | 0 | 0 | |
| 조정교부금 등 | 24,684,308 | 24,684,308 | 24,684,308 | 0 | 0 | |
| 보 조 금 | 158,906,668 | 159,426,465 | 159,426,465 | 0 | 0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278,240,880 | 278,252,473 | 278,249,714 | 556 | 2,204 |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3.3%인 26,822,217천원이, 세외수입은 2.7%인 21,789,289천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6.1%인 288,872,870천원, 조정 교부금 등은 3.0%인 24,684,308원, 보조금은 19.9%인 159,426,465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7%인 278,249,714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결 산 액 | 683,358,232 | 782,117,824 | 631,699,788 | 98,142,134 (120,075) | 48,054,993 |
| 결산확인액 | 683,358,232 | 782,117,824 | 631,699,788 | 98,142,134 (120,075) | 48,054,993 |
| 차 액 | 0 | 0 | 0 | 0 | 0 |

○ 세출결산 개요

- ▶ 예산액은 683,358,232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8,759,59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82,117,824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2%인 1,384,440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세출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 해소기준에 맞추기 위한 경우 등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98,449,314천원으로 확인되었다.
-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7%에 해당하는 631,699,788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98,142,134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51,738,694천원, 계속비 이월 14,966,643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1,316,721천원(자금없는 이월액 2,105천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군 대형 계속사업의 추진 지연 등의 사유에 기인하였으며,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에 해당되는 48,054,993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등이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 지출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 액 |
|-------------|-------------|-----|
| 631,699,788 | 631,699,788 | 0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2018년도 지출액 | 2019회계연도 | | | 전년대비증감 | |
|-----------|---------------|-------------|-------------|-------|-------------|-------|
| |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율 | 금액 | 비율 |
| 합 계 | 415,062,719 | 782,117,824 | 631,699,788 | 80.77 | 216,637,069 | 52.2 |
| 일반공공행정 | 33,923,504 | 202,856,706 | 190,118,398 | 93.72 | 156,194,894 | 460.4 |
| 공공질서 및 안전 | 6,494,453 | 7,838,691 | 7,104,905 | 90.64 | 610,452 | 9.4 |
| 교 육 | 4,665,856 | 5,974,323 | 5,592,479 | 93.61 | 926,623 | 19.9 |
| 문화및관광 | 15,099,028 | 26,114,282 | 18,132,885 | 69.44 | 3,033,857 | 20.1 |
| 환경보호 | 36,799,501 | 50,718,350 | 47,133,780 | 92.93 | 10,334,279 | 28.1 |
| 사회복지 | 93,607,410 | 117,275,831 | 110,825,268 | 94.50 | 17,217,858 | 18.4 |
| 보 건 | 7,861,443 | 8,595,670 | 7,768,296 | 90.37 | △93,147 | △1.2 |
| 농림해양수산 | 85,937,878 | 128,087,676 | 93,017,174 | 72.62 | 7,079,296 | 8.2 |
| 산업·중소기업 | 7,969,849 | 21,861,020 | 20,902,839 | 95.62 | 12,932,990 | 162.3 |
| 수송및교통 | 20,467,517 | 42,443,282 | 21,760,634 | 51.27 | 1,293,117 | 6.3 |
| 국토및지역개발 | 46,088,504 | 88,370,825 | 54,516,752 | 61.69 | 8,428,248 | 18.3 |
| 예비비 | | 20,697,737 | | | | |
| 기 타 | 56,147,776 | 61,283,431 | 54,826,378 | 89.46 | △1,321,398 | △2.4 |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일반공공행정 190,118,398천원, 사회복지 110,825,268천원, 농림해양수산 93,017,174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일반 공공행정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160,000,000천원이 적립되어 460.4%가 증가되었으며, 보건은 전년대비 1.2%가 감소하였다.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포함)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합 계 | 77,969,768 | 79,978,297 | 79,417,468 | | 560,829 |
| 공기업특별회계 | 46,842,821 | 47,273,156 | 47,217,841 | | 55,315 |
| 상수도 | 20,048,065 | 20,408,736 | 20,366,891 | | 41,845 |
| 하수도 | 26,794,756 | 26,864,420 | 26,850,950 | | 13,470 |
| 기타특별회계 | 31,126,947 | 32,705,141 | 32,199,627 | | 505,514 |
| 의료보호기금 | 982,729 | 977,305 | 977,305 |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30,101 | 30,143 | 30,143 | | |
| 주차장관리 | 658,339 | 1,198,055 | 692,541 | | 505,514 |
| 산업단지조성사업 | 5,434,985 | 5,440,445 | 5,440,445 | | |
| 수질개선 | 5,575,379 | 5,580,013 | 5,580,013 | | |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768,222 | 770,142 | 770,142 | | |
| 농업발전기금 | 17,677,192 | 18,709,038 | 18,709,038 | | |
| 결산확인액 | 77,969,768 | 79,978,297 | 79,417,468 | | 560,829 |
| 차 액 | 0 | 0 | 0 | 0 | 0 |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79,417,468천원은 예산현액의 101.8%로서 1,447,700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기타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에 기인한 것이다.

○ 불납결손처분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각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 되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 수납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액 |
|------------|-------------|----|
| 79,417,468 | 79,417,468 | 0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합 계 | 72,303,648 | 77,969,769 | 41,899,937 | 7,413,712 | 27,307,394 |
| 공기업특별회계 | 42,480,145 | 46,842,822 | 31,400,317 | 3,350,330 | 10,830,475 |
| 상 수 도 | 18,874,648 | 20,048,066 | 14,143,541 | 1,574,503 | 4,330,021 |
| 하 수 도 | 23,605,497 | 26,794,756 | 17,256,776 | 1,775,827 | 6,500,454 |
| 기타특별회계 | 29,823,503 | 31,126,947 | 10,499,620 | 4,063,382 | 16,476,919 |
| 의료보호기금 | 982,729 | 982,729 | 918,410 | | 14,916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30,101 | 30,101 | 30,101 | | |
| 주차장관리 | 658,339 | 658,339 | 218,715 | | 439,624 |
| 산업단지조성사업 | 4,987,655 | 5,434,985 | 1,920,231 | 3,186,992 | 312,839 |
| 수질개선 | 4,747,770 | 5,575,379 | 4,728,179 | 754,181 | 70,320 |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739,717 | 768,222 | 638,254 | 122,209 | 7,758 |
| 농업발전기금 | 17,677,192 | 17,677,192 | 2,045,730 | | 15,631,462 |
| 결산확인액 | 72,303,648 | 77,969,769 | 41,899,937 | 7,413,712 | 27,307,394 |
| 차 액 | 0 | 0 | 0 | 0 | 0 |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세출결산 개요

- ▶ 예산액은 72,303,648천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5,666,121천원으로 예산현액은 77,969,769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과 이체는 없었다.
-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3.7%에 해당하는 41,899,937천원이며 불용액이 35%인 27,307,394천원으로 과다한 것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적립금이 15,631,462천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기인하였으며,
- ▶ 이월액은 7,413,712천원이 발생되었고 이는 주로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결산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부합되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 지출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 액 |
|------------|-------------|-----|
| 41,899,937 | 41,899,937 | 0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 ·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속비이월 | | 명시이월 | | 사고이월 | | 비고 |
|-----------------|-------|------------|------|------------|------|------------|----|
| | 내역 | 금액 | 내역 | 금액 | 내역 | 금액 | |
| 합 계 | | 17,437,643 | | 55,176,243 | | 32,941,960 | |
| 일반회계 | | 14,966,643 | | 51,856,664 | | 31,318,827 | |
| 일반공공행정 | | | | 4,826,407 | | 2,242,213 | |
| 공공질서및안전 | | | | 75,857 | | 20,000 | |
| 교육 | | | | 20,000 | | | |
| 문화및관광 | | | | 4,407,680 | | 2,314,720 | |
| 환경보호 | | | | 1,472,481 | | 1,161,773 | |
| 사회복지 | | | | 3,038,215 | | 49,396 | |
| 보건 | | | | | | | |
| 농림해양수산 | | 14,966,643 | | 3,559,847 | | 8,047,633 | |
| 산업·중소기업 | | | | 210,548 | | 72,821 | |
| 수송 및 교통 | | | | 13,793,852 | | 5,452,446 | |
| 국토 및 지역개발 | | | | 20,451,777 | | 11,957,825 | |
| 기 타 | | | | | | | |
| 기타특별회계 | | 1,621,000 | | 1,793,760 | | 648,622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 | | | | | |
| 산업단지조성사업 | | 1,621,000 | | 1,100,000 | | 465,992 | |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 | | 122,209 | | | |
| 수질 개선 | | | | 571,551 | | 182,630 | |
| 농업발전기금 | | |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850,000 | | 1,525,819 | | 974,511 | |
| 상수도사업 | | | | 830,000 | | 744,503 | |
| 하수도사업 | | 850,000 | | 695,819 | | 230,008 | |

○ 검사결과 계속비는 17,437,643천원, 사고이월비는 32,941,960천원, 명시
이월비는 검사결과 55,176,243천원으로 확인되었다.

3. 기금의 결산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전년도 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 당해연도 말 조성액 |
|-----------|--------------|--------------|-------------|---------|---------------|
| | | 증가 또는 감소액 | 조 성 액 | 사 용 액 | |
| 합 계 | 13,133,515 | 160,243,009 | 161,015,377 | 772,368 | 173,376,524 |
| 식품진흥기금 | 84,318 | 63,212 | 78,962 | 15,750 | 147,530 |
| 중소기업육성기금 | 6,547,213 | △7,023 | 107,425 | 114,448 | 6,540,190 |
| 사회복지기금 | 3,488,672 | 67,265 | 131,653 | 64,388 | 3,555,937 |
| 재난관리기금 | 1,146,297 | 96,333 | 646,998 | 550,665 | 1,242,630 |
| 아름예술제진흥기금 | 500,454 | 105 | 6,505 | 6,400 | 500,559 |
| 육외광고발전기금 | 283,337 | 25,174 | 25,924 | 750 | 308,511 |
| 체육진흥기금 | 1,083,224 | △2,057 | 17,910 | 19,967 | 1,081,167 |
| 재정안정화 적립금 | | 160,000,000 | 160,000,000 | | 160,000,000 |

- 거창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써, 2019회계 연도 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의 조성액 13,133,515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61,015,377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772,368천원을 공제한 173,376,524천원이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5년 평균 증가율 |
|--------------|------------|------------|------------|------------|-------------|--------------|
| 전년도말 조성액 | 12,840,358 | 13,236,728 | 13,385,705 | 13,565,175 | 13,133,515 | 0.6 |
| 당해연도 조성액 | 1,187,483 | 952,674 | 763,932 | 864,969 | 161,015,377 | 241.2 |
| 당해연도 사용액 | 792,113 | 802,697 | 584,462 | 1,296,629 | 772,368 | △0.6 |
| 당해연도말 조성액 | 13,235,728 | 13,385,705 | 13,565,175 | 13,133,515 | 173,376,524 | 90.2 |

- 거창군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90.2%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기금조성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14.8%p 낮기 때문이다.

〈 기금운용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 수 입 | 지 출 |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
|-----------|-------------------|-------------|-------------|--------------------|
| 합 계 | | 174,148,892 | 174,148,892 | |
| 사회복지기금 | | 3,620,326 | 3,620,326 | |
| 식품진흥기금 | | 163,280 | 163,280 | |
| 재난관리기금 | | 1,793,294 | 1,793,294 | |
| 중소기업육성기금 | | 6,654,638 | 6,654,638 | |
| 아름예술제진흥기금 | | 506,958 | 506,958 | |
| 육외광고발전기금 | | 309,261 | 309,261 | |
| 체육진흥기금 | | 1,101,135 | 1,101,135 | |
| 재정안정화적립금 | | 160,000,000 | 160,000,000 | |

- 감사결과 사회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의 본년도 말 현재액은 173,376,524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보다 160,243,009천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원인은 재정안정화 기금이 적립된 것이며 기금은 운용계획대로 집행되었다.

4. 재무제표의 결산

2019회계연도 거창군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9 | 2018 | 전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자 산 | 2,400,717,414 | 2,284,204,581 | 116,512,833 | 5.10% |
| I. 유 동 자 산 | 387,548,580 | 327,310,564 | 60,238,016 | 18.40% |
| II. 투 자 자 산 | 3,776,407 | 13,111,229 | (△9,334,822) | (71.2%) |
| III. 일 반 유 형 자 산 | 107,639,450 | 96,980,057 | 10,659,393 | 10.99% |
| IV. 주 민 편 의 시 설 | 313,500,270 | 308,261,333 | 5,238,937 | 1.70% |
| V. 사 회 기 반 시 설 | 1,587,225,677 | 1,537,649,994 | 49,575,683 | 3.22% |
|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 1,027,030 | 891,404 | 135,626 | 15.21% |
| 부 채 | 36,646,172 | 37,932,513 | (1,286,341) | (0.03%) |
| I. 유 동 부 채 | 12,538,845 | 11,942,025 | 596,819 | 0.05% |
|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 - | - | |
|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 24,107,327 | 25,990,488 | (1,883,160) | (0.07%) |
| 순 자 산 | 2,364,071,242 | 2,246,272,068 | 117,799,174 | 5.24 |
| I. 고 정 순 자 산 | 1,984,524,822 | 1,714,354,033 | 270,170,789 | 15.76 |
| II. 특 정 순 자 산 | 173,858,329 | 13,515,288 | 160,343,041 | 11.86 |
| III. 일 반 순 자 산 | 205,688,091 | 518,402,747 | (312,714,656) | (60.32) |

- 2019회계연도말 거창군의 자산은 2,400,717,414천원으로
전년도 2,284,204,581천원보다 116,512,833천원(5.10%)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유동성 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유동자산 총액은 387,548,580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60,238,016천원(18.40%)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본 회계연도 말 부채는 36,646,172천원으로 전년도 37,932,513천원보다
1,286,341천원(0.03%) 감소하였는데 유동부채가 12,538,845천원이고,
기타비유동부채가 24,107,327천원으로 기타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65.78%를
차지하고 있다.
- 유동부채 총액은 12,538,845천원으로 전년대비 596,819천원(0.05%) 증가
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의 총액은 24,107,327천원으로
전년대비 1,883,160천원(0.07%)이 감소하였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9 | 2018 | 전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I. 사업순원가 (가 - 나) | 356,890,050 | 139,992,326 | 216,897,724 | 154.9% |
| 가. 사업총원가 | 510,605,984 | 301,483,827 | 209,122,157 | 69.3% |
| 나. 사업수익 | 153,715,934 | 161,491,501 | (7,755,567) | (4.8%) |
| II. 관리운영비 | (114,561,201) | 52,325,673 | (166,886,874) | (3.18%) |
| III. 비배분비용 | 15,521,134 | 14,365,100 | 1,156,034 | 8.0% |
| IV. 비배분수익 | 26,974,465 | 28,360,290 | (1,385,825) | (4.8%)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230,875,518 | 178,322,809 | 52,552,709 | 29.4% |
| VI. 일반수익 | 352,347,445 | 304,283,407 | 48,064,038 | 15.7% |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 (121,471,927) | (125,960,598) | 4,488,671 | (3.5%) |

○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거창군의 사업 순원가는 356,890,050천원이고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30,875,518천원이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 230,875,518천원에서 일반수익 352,347,445천원을 차감한 본 회계연도 거창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121,471,927천원이다.

○ 재정운영 결과 전년도의 (-)125,960,598천원보다 4,488,671천원(3.5%)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입금수입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5. 성과보고서

- 거창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2019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거창군에서는 본 회계연도의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라는 비전과 군민공감 소통화합 등 5개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21개, 정책사업목표 69개, 단위사업 19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9개의 성과지표는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 부서명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 목표 | | 성과지표 달성 여부 | | |
|-------|-----------|---------|--------|----------------|-----|--------------|
| | | 개 수 | 지표수(A) | 초과달성, 달성(B) | 미달성 | 달성률 (A/B) |
| 계 | 21 | 69 | 194 | 172 | 22 | 84.4 |
| 의회사무과 | 1 | 1 | 2 | 2 | 0 | |
| 기획감사실 | 1 | 1 | 5 | 4 | 1 | |
| 행정과 | 1 | 2 | 6 | 6 | 0 | |
| 미래전략과 | 1 | 4 | 9 | 8 | 1 | |
| 인구교육과 | 1 | 5 | 8 | 6 | 2 | |
| 민원소통과 | 1 | 3 | 9 | 9 | 0 | |
| 재무과 | 1 | 2 | 9 | 8 | 1 | |
| 문화관광과 | 1 | 8 | 17 | 13 | 4 | |
| 복지정책과 | 1 | 4 | 9 | 9 | 0 | |

| | | | | | | |
|---------|---|---|----|----|---|--|
| 행복나눔과 | 1 | 4 | 17 | 17 | 0 | |
| 경제교통과 | 1 | 6 | 12 | 10 | 2 | |
| 안전총괄과 | 1 | 3 | 12 | 12 | 0 | |
| 산 립 과 | 1 | 2 | 9 | 9 | 0 | |
| 환 경 과 | 1 | 4 | 12 | 11 | 1 | |
| 건 설 과 | 1 | 5 | 12 | 10 | 2 | |
| 도시건축과 | 1 | 5 | 13 | 10 | 3 | |
| 농업기술센터 | 1 | 5 | 19 | 14 | 5 | |
| 보 건 소 | 1 | 1 | 3 | 3 | 0 | |
| 수도사업소 | 1 | 2 | 4 | 4 | 0 | |
| 채우시설사업소 | 1 | 1 | 5 | 5 | 0 | |
| 거창사전사업소 | 1 | 1 | 2 | 2 | 0 | |

-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1개부서는 172개의 지표를 100% 달성한 반면, 10개 부서에서는 22건이 미달성되어 87.2% 달성에 거치는 결과를 보였다.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성과지표의 임의변경, 설정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지표들이 확인되고,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일치되지 않는 정책지표가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합 계 | 3,883,629 | 276,362 | 622,356 | 3,537,635 |
| 일 반 회 계 | 3,648,827 | 234,923 | 367,002 | 3,516,548 |
| 특 별 회 계 | - | - | - | - |
|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 - | - | - | - |
| 기 금 | 234,802 | 41,439 | 255,154 | 21,087 |
| 사회복지기금 | 234,802 | 41,439 | 255,154 | 21,087 |

- 채권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537,635천원으로 전년도 말 잔액 3,883,629천원에서 당해 연도 276,362천원이 발생하고, 622,356천원이 소멸되었다.
- 당해연도 소멸액 622,356천원 중 이행기간도래액은 286,046천원, 이행기한미도래액은 336,310천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 이행기한미도래액 중 당해연도에 이행 기한이 도래한 금액이다.
- 또한 당해 연도 말 채권 3,537,635천원은 보증금채권과 융자금채권으로, 보증금채권은 회원권이며, 융자금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주택융자 등이다.

(2) 채무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 증 | 감 | | |
| 합 계 | 822,553,325 | 28,849,322 | 18,447,391 | 832,955,256 | |
| 행정 재산 | 공공용재산 | 686,000,290 | 25,183,836 | 12,780,424 | 698,403,702 |
| | 공용재산 | 110,722,303 | 1,985,400 | 4,550,618 | 108,157,085 |
| | 기업용재산 | - | - | - | - |
| | 보존재산 | 3,584,415 | 19,086 | 3,231 | 3,600,270 |
| | 소 계 | 800,307,008 | 27,188,322 | 17,334,273 | 810,161,057 |
| 일반재산 | 22,246,317 | 1,661,000 | 1,113,118 | 22,794,199 | |

-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0,401,931천원이 증가한 832,955,256천원으로 행정재산이 810,161,057천원, 일반재산이 22,794,199천원이며, 공유재산 중 토지는 26,637필지 44,191천㎡로 331,789,577천원, 건물은 460동 228천㎡, 140,889,149천원이다.
- 주요 증가내용은 공공용 용지구입 676필지를 비롯한 교환, 구획정리, 기부채납, 수용, 무상귀속 등이며, 감소내용은 매각 22필지를 비롯한 합병, 이중등록 등이다.

(4)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전년도말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취 득 | 처 분 | |
| 수 량 | 822 | 278 | 22 | 1,078 |
| 금 액 | 7,179,373 | 925,353 | 415,314 | 7,689,412 |

- 검사결과 현재 물품은 전년도 보다 510,039천원이 증가한 7,689,412천원이며, 증가사유는 버스, 승용차, 화물트럭, 냉방기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이다.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세입세출 결산분야》

1.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세출예산 이월 필요성)

-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다하지 못하고 남은 것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다음 회계연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하지만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 회계별 | 구 분 | 예산현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비 율(%) | 비고 |
|------------|-------|-------------|--------------------------|--------|----|
| 합 계 | 계 | 813,244,769 | 102,085,440 (120,075) | 12.5 | |
| | 명시이월 | | 53,532,454 (117,970) | | |
| | 사고이월 | | 31,965,343 (2,105) | | |
| | 계속비이월 | | 16,587,643 | | |
| 일반회계 | 계 | 782,117,823 | 98,022,058 (120,075) | 12.5 | |
| | 명시이월 | | 51,738,694 (117,970) | | |
| | 사고이월 | | 31,316,721 (2,105) | | |
| | 계속비이월 | | 14,966,643 | | |
| 기타 특별회계 | 계 | 31,126,946 | 4,063,382 | 13.05 | |
| | 명시이월 | | 1,793,760 | | |
| | 사고이월 | | 648,622 | | |
| | 계속비이월 | | 1,621,000 | | |

(문제점)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연말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2019회계연도에 편성된 많은 사업을 지연 발주함으로써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102,085,440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2.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특별회계는 무려 13.05%를 차지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국·도비 사업 집행철저

(반환금 현황)

(단위 : 천원)

| | 2017년 (A) | 2018년 (B) | 2019년 (C) | 증감율(%) | |
|----|--------------|--------------|--------------|--------|--------|
| | | | | B/A | C/A |
| 계 | 5,094,096 | 3,542,450 | 2,903,864 | △30.4% | △18% |
| 국비 | 4,049,615 | 2,106,940 | 1,960,581 | △47.9% | △6.9% |
| 도비 | 1,044,480 | 1,435,509 | 943,282 | △37.4% | △34.2% |

(문제점)

-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반환금은 감소되고 있으나 사업비를 2,903,864천원을 반환한다는 것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보조사업에 따른 준비부담도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매칭사업비의 비율을 설정하는데 일선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현실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 금액을 최소화 해나가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포기하는 자는 불이익 처분도 따라야 할 것임

3.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미수납액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미수납액 | 사 유 별 | | | | | |
|-------------|-----------|-----------|---------|-----------|-----------|-----------|---------|
| | | 무재산 | 행 불 방 명 | 납 세 태 만 | 소 계 송 류 | 기 타 | |
| 합 계 | 3,665,843 | 52,586 | 45,307 | 1,921,053 | 9,305 | 1,275,252 | |
| 일 회 반 계 | 계 | 3,160,329 | 52,586 | 45,307 | 1,921,053 | 9,305 | 769,738 |
| | 지방세 | 1,222,476 | 45,183 | 38,912 | 340,539 | 9,290 | 427,938 |
| | 세 외 수 입 | 1,937,853 | 7,403 | 6,395 | 1,580,514 | 15 | 341,800 |
| 기 타 특 별 회 계 | 세 외 수 입 | 505,514 | | | | 0 | 505,514 |

(문제점)

- 2019년도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전년도 3,033,568천원보다 632,275천원이 증가한 3,665,843천원임
-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그 중 납세태만이 52.4%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의 경우 50% 이상이 과태로 체납이며, 이중 대부분이 차량관련 과태료이나 납세자들이 자동차를 매매, 폐차 할 때 납부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액은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 납세태만 등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 각종 점용료, 사용료는 사용대가인 만큼, 체납시 사용허가 재검토 조치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납부방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 추진 대책이 필요함

4.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 축소방안 강구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
| | | | | |
| 비과세·감면액 | 계 | 7,272,622 | 100.00 | 취득세 40% 재산세 52% 점유 |
| | 비과세 | 3,783,177 | 52.02 | |
| | 감면 | 3,489,445 | 47.98 | |
| 지방세 징수액(B) | | 46,405,697 | - | |

(문 제 점)

- 2019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7,272,622천원으로
 - 일반회계 세입금 799,844백만원의 0.9%,
 - 지방세 징수액 46,405백만원의 15.67%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재정의 소중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입을
 -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이 바람직하나 일정부분을 비과세·감면이 차지하고 있어 자체수입의 잠식은 물론 지방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을 현실성과 합목적성을 감안하여 항목별로 정밀분석한 후 정비하기 바람,
- 중앙정부 정책의 환경변화에 따른 감면목적 달성, 납세자 담세능력, 감면의 기득권화 배제 등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의 축소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람

5.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사 업 명 | 집 행 내 역 | | | 비고 |
|--------------------|---------|-----|---------|----|
| | 예산액 | 집행액 | 불용액 | |
|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 외 23건 | 334,192 | | 334,192 | |

| 연번 | 사 업 명 | 예산액 | 집행액 | 불용액 |
|----|---------------------------|--------|-----|--------|
| 1 | 범군민의식개혁운동추진 | 25,000 | 0 | 25,000 |
| 2 | 읍면지 편찬 | 92,500 | 0 | 92,500 |
| 3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1,000 | 0 | 1,000 |
| 4 |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 | 2,900 | 0 | 2,900 |
| 5 | 신장장애인혈액투석비지원 | 1,050 | 0 | 1,050 |
| 6 | BF인증 수수료 지원 | 4,000 | 0 | 4,000 |
| 7 | 가출여성 보호 | 600 | 0 | 600 |
| 8 | 입양축하금 지원 | 3,000 | 0 | 3,000 |
| 9 | 요보호아동 위문 | 260 | 0 | 260 |
| 10 | 가조안전체험관운영 | 3,000 | 0 | 3,000 |
| 11 |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 | 15,000 | 0 | 15,000 |
| 12 | 밤대체작목조성 | 9,300 | 0 | 9,300 |
| 13 | 위험도로관리 | 1,306 | 0 | 1,306 |
| 14 | 장기미집행시설 매입 | 2,160, | 0 | 2,160, |
| 15 | 정년농업인 취농인턴제 | 12,000 | 0 | 12,000 |
| 16 | 친환경에너지보급 | 84,000 | 0 | 84,000 |
| 17 | 사료저장소온도조절장치지원 | 16,660 | 0 | 16,660 |
| 18 |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 4,356 | 0 | 4,356 |
| 19 | 신품종 별 보급용 별통지원 | 1,800 | 0 | 1,800 |
| 20 |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보급시범 | 12,000 | 0 | 12,000 |
| 21 | 논콩채배 일관기계화시범사업 | 24,000 | 0 | 24,000 |
| 22 | 전기난방기 지원 | 8,000 | 0 | 8,000 |
| 23 |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 | 7,000 | 0 | 7,000 |
| 24 | 정신질환자의료비등 지원사업 | 3,300 | 0 | 3,300 |

(문제점)

-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 변경·승인처리 하여야 함에도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 외 23건 334,192 천원이 전액 미 집행되었으며,
- 또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삭감조치 및 이월예산으로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을 요구할 때 집행의 정확한 분석을 하여 예산을 요구할 것을 권고함

6.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관리 철저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 징수결정액 | 수납총액 | 미수납액 |
|------|---------|---------|--------|
| 합계 | 483,376 | 470,978 | 12,398 |
| 2019 | 163,355 | 157,889 | 5,466 |
| 2018 | 158,949 | 155,584 | 3,365 |
| 2017 | 161,072 | 157,505 | 3,567 |

(문제점)

- 징수결정액 483,376천원 중 470,978천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 12,39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2.6%로 개인사업자들의 체납액이 증가됨

(개선 및 권고사항)

-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준수하도록 읍·면에 공문 시달과 함께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 읍·면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납액 일소방안을 마련하여 도로사용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권고함
- 부득이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 수입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작성 철저

(현 황)

-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현금예금성자산 잔액 6,247,128,270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잔액 6,223,350,577원과 23,777,693원의 차액 발생이 되고 있는바
- 차액의 발생요인은 “기타(카드대금)” 금액 11,161,623원과 “수입지출외 현금” 12,616,070원에 기인한 것임

(문제점)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현금예금명세서)에 상수도사업회계에서 집행된 카드대금을 법인통장잔액이라는 이유로 다시 잔액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복사항이므로 결산오류라 판단 됨

(개선 및 권고사항)

- 회계연도 총괄결산서와 특별회계결산서 내용은 상호 일치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인통장 관리운영 및 부속명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8. 사업현장 방문 점검 결과

(1)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사 업 비 : 41,350백만원(국비 22,635 도비 5,482 군비 13,233)
- 사업내용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전시관, 게스트하우스)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마운틴코스트 1.5km 승객운송 시스템)
 - 거.합.산 향노화 휴양체험지구(산림휴양관 10실, 오토캠핑장 23면)
 - 빼재산림레포츠파크 진입도로 개설(L=604km)
 - 레저보험타운(고공전망대 인공 암벽등반)

(문제점)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 사업의 경우

- ▶201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폐 도로를 활용한다는 위치적 제약과 국외 업체의 자재와 기술을 도입하여 시설을 설치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현재 사업 진척율이 35%정도로 저조함
- ▶2019년 마운틴코스터 제작·설치가 계약되어 설계 중에 있으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외국 업체와 원활한 협의진행이 되지 않아 또다시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거합산 향노화 휴양체험지구의 경우

- ▶사업규모에 비해 숙박시설(산림휴양관 10실)이 부족하며,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추가 숙박시설이 필요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은 상당한 시간과 사업비가 투입되어 진행되어 오는 사업으로 마운틴코스터 제작·설치에 대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며, 시행 가능한 부분은 협의 완료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권장하며,
- 또한 거함산향노화 휴양체험지구는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부족한 숙박시설 설치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2) 거창 창포원

(사업개요)

-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86 (창포원길 21-1)
- 면 적 : 424.823㎡(128,500평)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7년 12월
- 사 업 비 : 23,930백만원(국비6,850 도비1,355 군비11,164 기금4,561)
- 사업내용 : 방문자 센터, 온실, 창포원, 수련원, 국화원 등

※제2창포원 조성

- 남하 산포지구 : 286.497㎡(86,665평)
- 남상 대현지구 : 180.673㎡(54,653평)
- 사업내용 : 습지 및 수림경관, 체육시설(축구장 4면, 풋살장 2면)
- 준공예정일 : 2023년

(문제점)

○ 거창 창포원의 경우

▶2017년 12월에 친환경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4계절 관광테마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키즈카페, 가족물놀이 체험장, 자전거 대여소 운영으로 내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조직과 인력이 재조정 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창포원은 제2창포원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진단 및 배치가 필요한바 현재 2계/ 7명 근무를 하고 있으나.

1과/ 3계/ 20명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 권장사항이 있어 자체적인 인력 진단에 의한 인력 충원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21년(7년)
- 사 업 비 : 9개사업/28,050백만원(국비 11,940 도비 3,910 군비 12,200)
- 사업내용
 - 등산로 주차장 - 치유의 숲 조성 - 자연휴양림
 - Y형 출렁다리 - 자생식물원 조성 - 등산로 조성사업
 - 진입로 확장 - 지하수 개발
 - 휴양림 보완등(마장재주변 숲길, 전망데크)

(문제점)

○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 ▶2020.5.2. 개장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개장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로, 개장식 이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로 등산객 및 관광객을 이동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나, 타 지역에 설치되지 않은 Y자 출렁다리 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문제 대두가 우려됨

(개선 및 권고사항)

- 거창향노화 힐링랜드는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개장식 일정이 확정되면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임시주차장 설치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셔틀버스 용역업체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진입도로(테크로드맞은편)변의 꽃길 조성방안과 함께 향노화힐링랜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력채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성과보고서 분야 》

1.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미흡

(현 황)

- 성과계획 및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작성토록 되어있음.
- 2019년도 거창군에서는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21개, 정책사업목표 69개, 단위사업 194개를 설정하고, 목표치 설정 후 연말 실적을 측정한 결과 초과달성 31개, 달성 141개, 미달성 22개로 나타났으며, 사업비는 631,022 백만원이 소요 된 것으로 결산되었음.

○ 2019년 성과보고서 현황

단위:개,백만원

| 구 분 | 전 략 목표수 | 정책사업 목표 | | 성과지표 달성도 | | | 결 산 액 | | |
|-----|------------|---------|-----|------------|-----|-----|---------|------------|------------|
| | | 개 수 | 지표수 | 초 과 달 성 | 달 성 | 미달성 | 결산액 | 전년도 결산액 | 비 교 증 감 |
| 총계 | 21 | 69 | 194 | 31 | 141 | 22 | 631,022 | 413,427 | 217,596 |

(문제점)

-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은 성과보고서의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과 함께 목표달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 성과분석 결과 미달성, 초과달성(130% 이상)한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선해 나가야 함
- 그러나 2016년부터 성과보고서가 결산서 필수 구성서류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가 특정산식이 일치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임의수정, 변경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 그 밖에도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성과지표 설정
-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이하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가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설정
- ‘정주인구 10만 조성,과 같이 당해 연도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한 성과 지표 설정
- 실적치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는 측정방법 설정
- 전년도에 비해 목표치를 적게 세워 목표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가 설정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 특히 실적치 산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 명시가 부족하고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은 부서장이나 직원들의 관심과 교육, 이해 부족으로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보완을 권고했으나 지금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상의 ‘정책사업 달성도’와 ‘단위사업과 단위사업’ 목표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실적치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람
- 아울러 담당 총괄담당 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와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문제가 있는 성과지표, 측정산식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개선해 나가시기 바람

2.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설정 부 적정

(현 황)

- 거창군의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에 대한 초과 목표달성 결과를 보면 최소 ‘매력있는 마을조성’ 132%에서 ‘소규모 지역개발’ 최대 417%까지 분포하고 있음.
- 지표별 초과달성 현황

| 부서명 | 지표 | 목표 | 실적 | 달성율 (%) | 비고 |
|--------|-------------------|--------|--------|---------|----|
| 행정과 | 정보화 기기 교체(대수) | 160 | 226 | 141 | |
| 재무과 | 체납세 징수액 | 180 | 555 | 308 | |
| | 이자수입액(백만원) | 2,700 | 5,327 | 197 | |
| 문화관광과 | 문화공연 및 전시계획(횟수) | 23 | 71 | 308 | |
| | 거창관광 홍보 | 80 | 148 | 185 | |
| | 야영장 사이트이용객(수/명) | 7,500 | 14,772 | 197 | |
| 복지정책과 |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건수 | 6,000 | 10,473 | 174 | |
| 경제교통과 | 에너지 자립마을육성 | 100 | 270 | 270 | |
| | 신생에너지 보급 | 55 | 208 | 378 | |
| | 도시가스 공급 | 200 | 762 | 381 | |
| 안전총괄과 |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 20 | 34 | 170 | |
| 산림과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시험분석지원 | 200 | 359 | 179 | |
| 건설과 | 마을쉼터, 버스승강장 설치 | 3 | 8 | 267 | |
| | 소규모 지역개발 | 29 | 121 | 417 | |
|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임대실적 | 5,000 | 9,524 | 190 | |
| | 고품질 쌀 생산 | 180 | 346 | 182 | |
| | 우량품종 갱신 | 60 | 97 | 162 | |
| | 매력 있는 마을 조성 | 25 | 33 | 132 | |
| | 체험 휴양마을 방문(방문/매출) | 60/450 | 81/822 | 158 | |

(문제점)

- 위 현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평가계획 수립 시 지표설정이 부적절했거나 지표설정이 적절하더라도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했기 때문임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토록 되어있음
- 재무과 체납세징수액의 경우 2018년 목표액 200백만원에서 2019에는 180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555백만원을 징수하여 308%,
문화관광과 홍보건수의 경우 2018년 목표액 120건, 2019년에는 80건으로 조정하여 148건의 홍보실적으로 185%,
건설과 마을쉼터 버스승강장설치사업은 2018년 6건에서 2019년 3건으로 8건을 설치하여 267%의 실적을 거양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됨

(개선 및 권고사항)

-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도록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축소하는 행위는 개선하여 주시고, 성과지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 향후 이러한 사례들의 원인을 분석하여 지표설정 시 목표달성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낮게 잡는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표설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과보고서 정책목표, 정책지표 임의변경

(현 황)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에 따라 작성토록 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 “성과보고서”는 최종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하여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성과보고서의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과 목표달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거창군의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 정책사업목표 69개, 단위사업 194개를 설정하여 연말실적을 측정한 결과 초과달성 31개, 달성 141개, 미달성 22개로 운영되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31,022백만원으로 결산되었음

(문제점)

- 거창군에서 작성 제출된 성과보고서에는 정책목표와 정책지표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추가로 선정하여 성과계획서와 달리 지표가 변경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정책목표는 당초 70개에서 69개소 1개가 축소, 정책지표는 196개에서 2개가 축소된 194개로 운영되었음

○ 정책목표 및 정책지표 변경현황

| 부 서 명 | 정책목표 | | 정책지표 | | 성과보고서 누락 또는 추가지표 |
|-----------------|------|-----------|--------|------------|-------------------------------------------------------------------------------------------------------------|
| | 당 초 | 변 경 | 당 초 | 변 경 | |
| 합 계 | 70 | 196 | 69(△1) | 194(△2) | - |
| 행 정 과 안전총괄과 | 2 | 2 | 8 | 6(△2) | - 정보통신 보안교육 - 실시간 방송시스템 운영 |
| 환 경 과 | 4 | 4 | 11 | 12(1) | - 매립장 조성사업 완료 |
| 도시건축과 | 5 | 5 | 12 | 13(1) |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역량강화용역 |
| 농업기술센터 산 립 과 | 6 | 5 (△1) | 21 | 19 (△2) | - 정책목표 향노화 힐링중심도시 도약 - 정책지표 향노화웰리스 체험관광지 조성 향노화휴양지 체험지구 조성 거창약초유통센터 운영 거창푸드종합센터 연 매출액(+1) |

- 위 현황과 같이 행정과에서 작성된 정책지표인 정보통신 보안교육 및 실시간 방송시스템 운영은 행정기구개편으로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면서 누락 되고
-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성된 정책목표 향노화 힐링중심도시 도약과 행정지표인 향노화웰리스 체험관광지 조성, 향노화휴양지 체험지구 조성, 거창약초유통센터 운영은 담당부서가 산림과로 조정된 후 성과보고서 작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정책지표인 환경과 매립장 조성사업 완료와 도시건축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역량강화용역, 산림과의 농업기술센터 거창푸드종합센터 연 매출액은 성과계획서 작성 없이 보고서가 작성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는 최종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하여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 행정기구개편과 부서 업무조정 등으로 성과계획서에 작성된 정책목표와 정책지표가 누락되어 성과보고서에 보고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과계획서에 없는 정책지표를 가지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례는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 성과지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보고서의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과 함께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는 물론, 총괄부서에서도 작성된 계획서와 보고서가 일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수범사례 》

1. 2019 경상남도 지방세정 실적 종합평가 “우수”

- 평가개요 : 시군 간 선의의 경쟁과 세수확충을 통한 지방세정 발전도모
- 대상기간 : 2018년 1.1. ~ 12.31.
- 주요내용 : 지방세정(세외수입 포함) 업무 실적
 - ※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 심사, 세외수입, 지방소득세, 일반세정운영 등(8개 분야, 22개 항목)
- 평가결과 : 군부 우수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평가결과 | | 우수 | 우수 | 노력 | 장려 | 우수 |
| 상사업비 | 400 | 100 | 100 | 40 | 80 | 80 |

※ 최근 5년간 연속 수상(상사업비 400만원 확보)

2. 2019년도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전국 최우수 선정

- 배경 및 목적
 -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성과의 공유 확산을 통한 상향식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농식품부 주관 추진 (2014년~)
 - 콘테스트를 통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 주민 교육, 공동체 화합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추진경과

- 2019. 6. : 행복마을 콘테스트 빙기실 마을 참가 신청
- 2019. 7. : 경남도 최우수, 중앙참가기회 획득
- 2019. 7. : 현장평가 실시
- 2019. 8. : 중앙콘테스트 참가

○ 평가분야 및 내용

| 참가마을 | 분야 | 평가내용 |
|----------|-------|----------------------------|
| 북상 빙기실마을 | 소득·체험 |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소득·체험사업 성과 등 |

※평가단계별 배점

| 합계 | 현장평가 | 콘테스트(발표) | | |
|-----|------|----------|----|------|
| | | 소개 | 내용 | 퍼포먼스 |
| 100 | 50 | 50 | 40 | 10 |

○ 평가결과 : 전국 1위 최우수군 선정

-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빙기실 마을 대통령 표창
- 재정인센티브 : 시상금(마을) 4천만원

3. 불용 최소화, 세출예산 건전재정달성 : 재정안정화적립금도입

○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예산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 | 세출예산총액 (A) | 순세계잉여금 (B) | 비율 (A/B) |
|------|---------|---------------|---------------|-------------|
| 2017 | 계 | 570,863,187 | 108,857,878 | 22% |
| | 일반회계 | 505,735,241 | 79,729,835 | 16% |
| | 공기업특별회계 | 34,955,045 | 9,621,722 | 28% |
| | 기타특별회계 | 30,172,901 | 19,506,321 | 65% |
| 2018 | 계 | 679,027,402 | 164,893,539 | 24% |
| | 일반회계 | 613,495,684 | 133,769,772 | 22% |
| | 공기업특별회계 | 35,131,351 | 11,109,756 | 32% |
| | 기타특별회계 | 30,400,367 | 20,014,011 | 66% |
| 2019 | 계 | 755,661,880 | 206,161,903 | 27% |
| | 일반회계 | 683,358,232 | 174,462,700 | 26% |
| | 공기업특별회계 | 42,480,145 | 12,915,789 | 30% |
| | 기타특별회계 | 29,823,503 | 18,783,414 | 63%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 22%, 2018년도 24%, 2019년도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음

○ 도입근거

-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2018.10.31.)
-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2019.9.11.)

○ 설치목적

-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유지

○ 설치년도 : 2019년

○ 재원조성 : 일반회계의 출연금(전입금) 및 예금 이자수입

○ 적립금의 사용

-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
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 채무부담 사업비
- 그 밖에 군정추진에 필요한 경비

※ 한 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2019년 2회 추경 | 2019년 3회 추경 |
|-------------|-------------------------------|
| 100,000,000 | 160,000,000 (증 60,000,000) |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 강구

(1) 개선 및 권고사항

-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부서에서도 당초부터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야하며,
-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제도를 도입하여, 여유자금을 적립해 놓았다가 세입감소시나 대규모 사업추진 등에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바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조성으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억제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등 세출예산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였음
- 관련근거
 -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2018.10.31.)
 -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2019.9.11.)
- 최근 3년간 당초예산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단위: 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 | 2018 | 2019 | | 2020 | |
|------------|---------|---------|--------|--------|----------|
| |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 예산 편성액 | 37,900 | 72,900 | 35,000 | 49,900 | △23,000 |
| 결산액 | 133,770 | 174,463 | 40,693 | 64,720 | △109,743 |

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과다 편성 및 지출 부적정

(1) 개선 및 권고사항

- 예비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달리 확보기준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적정한 금액을 확보함으로써, 재원이 필요이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내재적 지출제한 기준에 맞게 사용 결정된 예비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90% 감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편성시기 | 예산액 | 결정액 | 비고 |
|----------|------------------|--------------|----|
| 18년 결산추경 | 134,966 | 896 | |
| 19년 결산추경 | 13,351 | 182 | |
| 증감 | △121,615(△90.1%) | △714(△79.7%) | |

-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설치로 초과세입 적립

(3) 기타 참고사항

○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개요

- 설치개요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설치년도 : 2019년
 - 적립현황 : 160,000백만원(2019.12.31.기준)
 - 기금용도
 - ▶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 ▶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 ▶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사업의 경비
 - ▶ 채무부담 사업비
 - ▶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 ※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3.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과소편성 운영 개선

(1)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 편성 시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세입을 전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예산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으며,
- 각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요구된 세출예산 심사를 강화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후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바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재정안정화 적립 기금 조성으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억제, 불용 최소화, 결산 대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건전 재정운영과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음

※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현황

-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64,720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액: 49,900백만원
- 편성율 : 77%

○ 관련근거

-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2018.10.31.)
-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2019.9.11.)

○ 최근 3년간 당초예산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단위: 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 | 2018 | 2019 | | 2020 | |
|------------|---------|---------|--------|--------|----------|
| |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 예산 편성액 | 37,900 | 72,900 | 35,000 | 49,900 | △23,000 |
| 결산액 | 133,770 | 174,463 | 40,693 | 64,720 | △109,743 |

○ 재정안정화 적립금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재정안정화 적립 기금 | 2019년 2회 추경 | 2019년 3회 추경 |
|----------------|-------------|-----------------------|
| | 100,000 | 160,000 (증 60,000) |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속명세서 정비

(1) 개선 및 권고사항

- 회계연도 총괄 결산서와 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은 상호 일치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2018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원 개인 사비 성격의 기금이 기관의 자산으로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 법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직원 상조회비 등은 별도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법인통장 관리운영 및 부속명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직원 상조회비 통장을 법인통장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 결산 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상조회비 잔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작성하였음

5. 식품진흥기금 운용 부적정

(1) 개선 및 권고사항

- 상급기관으로부터 교부된 예산은 최대한 빨리 예산에 편성하여, 당초 목적하는 사업을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상급기관으로부터 교부된 예산을 조속히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6. 현장방문 점검

□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1) 개선 및 권고사항

-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기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시설들과의 차별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이 완료되기 전부터 미리 무주 리조트 및 구천동 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방안과 TV,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객 유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타 자치단체시설들과의 차별화가 필요하여 복합 산악레포츠타운 추진을 위한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을 2020년~2022년 조성계획으로 국비포함 56억원을 확보하여 2020년 기본계획 설계용역 시행계획이며,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사업」은 국비지원이 지연되어 2021년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임
- 사업완료 전 TV예능프로그램 유치 등 관광객 유인을 위한 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음

□ 거창창포원

(1) 개선 및 권고사항

- 창포원은 가조온천, 수승대 명승지, 서울우유 등 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다목적 광장을 활용한 각종 축제, 행사유치 및 공원내 순환레일바이크 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가조온천, 수승대명승지, 서울우유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필요
 - 관련부서 및 업체측에 거창창포원을 연계한 투어코스개발과 각종 행사나 워크숍을 다목적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다목적 광장을 활용한 각종 행사 등 개최 및 유치 필요
 - 창포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관광명소로 수익사업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2019.5월
 - 전국카라반 정기모임 개최: 2019.9월
 - 창포원 자전거소품: 2019.9월
 - 합천댐 30주년 거창군민 어울림한마당 개최: 2019.10
 - 키즈카페, 가족물놀이, 연날리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사업 시행 필요
 - 창포원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함
 - 키즈카페·북카페 설치·운영 : 2019.7월(21,985명)
※2020.3.부터 유료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연기
 - 여름철 물놀이 행사 : 2019.7~8월 (11,100명)
 - 자전거 대여소 운영 : 2020. 3월

□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

(1) 개선 및 권고사항

- 항노화힐링랜드 조성사업은 기존의 진입도로를 정비하면서 계곡을 따라 보행자를 위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아울러 가조면 소재지나 용당소마을 인근에 대형차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이나 휴일등에 순환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현재 항노화힐링랜드 진입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부터 편입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 예정임
- 이와 연계하여 계곡을 따라 보행자를 위한 데크로드 설치사업을 2019.12월~2020.5월 완료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 가조면소재지 주차장은 도시건축과에서 조성중이며, 이와 연계하여 연접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산림과에서 조성 중에 있음

7. 성과목표 체계의 논리성, 연계성 미흡

(1) 개선 및 권고사항

- 거창군의 미션→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 목표→단위사업(이행과제)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의 상·하위 목표들이 논리적·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체계(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와 1:1로 일치시켜 연계성이 있도록 설정하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이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와 달성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작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충실한 성과분석, 목표달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권고함
- 아울러 성과보고서 총괄담당 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와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각 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부서장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세부작성요령 안내 공문 발송 : 기획예산담당관 - 15759호(2019.10.4.)
- 사업부서 개별 안내 조치 : 전화, 온메일 등
- 성과분석 시 전체 사업량에 대해 미달성(100%미만), 초과달성(130% 이상) 원인분석 작성

8. 현안·역점사업, 신규·특수시책 성과계획서 미 작성

(1) 개선 및 권고사항

- 거창군에서는 예산을 수반한 단위사업에 대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본예산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 결정된 본예산의 변경 결과는 물론, 추가경정예산 등 성과계획서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 보완하여 성과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주시고,
-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시 각 부서에서 계획한 현안, 역점사업, 신규, 특수시책을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권고함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2020년 당초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수정계획서 작성 완료
-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 작성 시 예산의 성과계획서 지표와 연계하여 작성 협의(기획담당)

V. 금고의 결산

2019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단위:원)

| 회 계 별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잔액 |
|-----------------|-----------------|-----------------|-----------------|
| 합 계 | 879,262,330,842 | 673,599,725,596 | 205,662,605,246 |
| 일반회계 | 799,844,862,605 | 631,699,788,166 | 168,145,074,439 |
| 특별회계 | 79,417,468,237 | 41,899,937,430 | 37,517,530,807 |
| 공기업특별회계 | 47,217,840,785 | 31,400,317,380 | 15,817,523,405 |
| 상수도사업 | 20,366,891,277 | 14,143,540,700 | 6,223,350,577 |
| 하수도사업 | 26,850,949,508 | 17,256,776,680 | 9,594,172,828 |
| 기타특별회계 | 32,199,627,452 | 10,499,620,050 | 21,700,007,402 |
| 의료보호기금 | 977,305,080 | 918,409,510 | 58,895,570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30,142,814 | 30,101,000 | 41,814 |
| 주차장관리 | 692,541,156 | 218,715,110 | 473,826,046 |
| 산업단지조성사업 | 5,440,445,346 | 1,920,231,410 | 3,520,213,936 |
| 수질개선 | 5,580,012,838 | 4,728,179,160 | 851,833,678 |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770,142,040 | 638,254,030 | 131,888,010 |
| 농업발전기금 | 18,709,038,178 | 2,045,729,830 | 16,663,308,348 |

- 2020년 1월 20일 현재 각 회계별 금고 보관 금액을 확인한 결과 2019년도 잔액과 일치하였음
- 금고의 지정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경쟁의 방법에 의거 3년 단위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정하였으며,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회계별로 구분하여 2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